
**2023년 방송콘텐츠 유통
방영권 지원 운영 · 관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3. 2. 21.



방송미디어본부 방송콘텐츠진흥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 (1)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 (2)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 (3)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4)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6)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7)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 등의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9)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0) 계약해제·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1)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2)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3)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 (14)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 (15)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 (16)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내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 (17)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 (18) 한국방송통신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타사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307, 2018.8.31.) 이에 우리 진흥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존중·보호의무를 준수하고,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합니다.

목 차

I . 사업 개요	1
II . 제안요청내용	3
III .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	11
IV . 입찰안내	17

|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3년 방송콘텐츠 유통 방영권 지원 운영 · 관리
2. 사업금액 : 금 50,000,000원(금 오천만원) / VAT 포함
3. 사업기간 : 2023.06.01. ~ 2023.11.30.
4.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내 우수 프로그램의 유통 활성화 및 해외 한국어 방송사 대상 방송 콘텐츠 제공을 위해 외부 전문 전담인력 구성하여 업무 위탁

5. 추진 목적 또는 추진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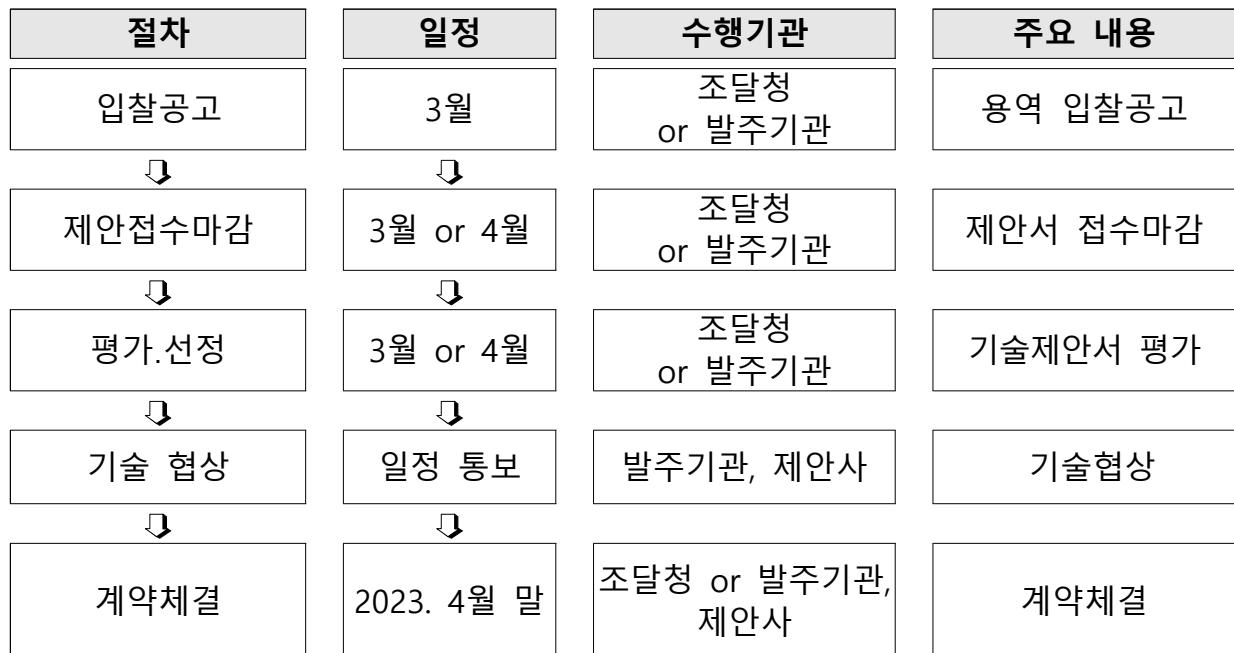
-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공공 · 공익 프로그램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국내 방송사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방영권 지원
- 방송콘텐츠 수급이 어려운 해외 지역의 한국어 방송사를 대상으로 국내 우수프로그램을 구매하여 방영권 지원

6. 주요내용 : 세부내용은 「II.제안요청내용」 참조

- 용역명 : 2023년 방송콘텐츠 유통 방영권 지원 운영 · 관리
 -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공공 · 공익 프로그램 영상의 품질검수, 파일변환, 영상 관리 및 제공,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결과 영상 관리 등
 - (해외 한국어 방송지원) 국내 방송사의 방송콘텐츠 영상 확보, 품질 및 회차 검수, 제공 및 사후관리

- 사업별 소요예산 : 금 50,000,000원(금 오천만원) / VAT포함

7. 추진일정 및 절차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 제안 요청 사항

사업개요

- 우수 프로그램 공익형 방영권 지원을 통해 콘텐츠가 부족한 국내 중소 방송 사업자 및 비영리 기관 등에 제공, 콘텐츠 보급 활성화 및 시청자 복지를 도모
- 방송콘텐츠 수급이 어려운 해외 지역의 한국어방송사를 대상으로 국내 우수프로그램을 구매하여 방영권 지원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공공·공익 프로그램 방영 확대를 통해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여 국내 방송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 국내 우수프로그램의 유통 활성화 및 해외 한국어방송사 대상 방송 콘텐츠 제공을 위해 외부 전문 전담인력 구성하여 업무 위탁

사업목표

- 콘텐츠가 부족한 채널 방송사업자(PP, SO)를 대상으로 공공·공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내 방송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우수프로그램 방영권 보장을 통한 사업성과 확대 및 콘텐츠 보급 활성화
- 콘텐츠 수급이 어려운 지역의 한국어방송사에 대해 국내 방송콘텐츠의 방영권을 구매 지원, 재외동포의 시청권 보장 및 방송한류 확대

□ 주요 과업내용

①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공공·공익 프로그램 방영권 지원

○ 방영권 제공 프로그램의 영상파일 변환 및 검수

- 최근 3년간('20년~'22년) 제작된 공공·공익 프로그램 영상을 확보하여 파일변환 후 자체적으로 서버(또는 스토리지) 등을 구축하여 관리

< 사업별 영상 관리 규모 >

관리대상	프로그램 편수	용량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공공·공익 프로그램	131개 프로그램, 235편 (편당 평균 60분) (편당 mov, mxf, mp4의 3개 포맷으로 변환·관리)	편당 약 30G (mp4 포맷은 약 3G)

※ 상기 관리대상 영상은 사업추진에 따라 내용 변경 및 규모 축소 또는 확대 가능

- 프로그램 영상이 방송용(마스터본)으로 송출 가능한지 여부를 검수하고 제작지원 고지, 전·후 타이틀 등 보유 여부 확인
- 모든 프로그램 영상을 편당 3개의 포맷(.mov/.mxf/.mp4)으로 파일 변환하여 제공 대상이 신청한 포맷으로 배포
※ 프로그램 편당 3개의 포맷으로 파일 변환 필요
- 변환된 영상은 프로그램 및 포맷 별로 폴더링하여 결과물로 제출
- 방송광고 금지품목 협찬고지 여부 검토 및 해당 내용 삭제

※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2항, 의료법 제56조,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6, 국민건강증진법 7조, 제8조의2, 9조의 4, 시행령 10조 별표1,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2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련 법률 제8조, 담배사업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9조,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 변환된 영상을 신청자에게 제공 및 관리

- 신청 사업자(기관) 별로 프로그램 영상을 FTP 및 저장매체(외장하드) 등의 제공 방식을 병행하여 배포하고 전달 방법(메뉴얼) 안내
※ 신청자에게 영상을 방송 송출 전 최소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배포
- 제공 대상자수 : 국내 방송사 및 공공기관, 학교 등 약 100개사
- 제공 대상 프로그램의 홍보영상(하이라이트)을 확보 후 FTP(또는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하여 사업 공모 시 신청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영상 제공

○ 배포된 영상에 대한 후속조치

- 배포된 영상 재생 및 화질 등의 문제 발생 시 후속조치를 취해 정상적으로 송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 후속조치 미완료 된 파일은 별도 스토리지 보관으로 별도 관리
- 조치 완료 영상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 제출

○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결과 영상 관리

- 방영권 지원과 별개로 최근 3개년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결과 영상을 방영권 제공 프로그램과 동일한 조건으로 관리

○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물이 발생할 경우 발생된 결과물의 저작권은 공동소유가 원칙
- 용역기간 완료 전에 파일변환 및 제공된 모든 영상을 반드시 스토리지에 담아 관리하고 이를 결과물로 제출
- 용역 결과보고서에 공공·공익 프로그램 배포 결과 및 영상 변환·관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② 해외 한국어 방송사 대상 방영권 구매 · 지원

○ 방영권 제공 프로그램 및 관리

- 국내 방송사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구매한 콘텐츠를 확보한 후 자체적으로 서버(또는 스토리지) 등을 구축하여 관리

< 사업별 영상 관리 규모 >

관리대상	콘텐츠 편수	용량
해외 한국어방송 방영권 지원 방송콘텐츠	2,000편 (편당 평균 50분)	편당 2G (MP4 파일 기준)

※ 상기 관리대상 영상은 사업추진에 따라 내용 변경 및 규모 축소 또는 확대 가능

- 콘텐츠 영상이 방송용으로 송출 가능한지 여부와 품질을 검수하고 전·후 타이틀 등 제출 여부 확인
- 모든 콘텐츠 영상은 MP4 포맷으로 파일을 변환하여 제공 대상인 해외 한국어 방송사업자에게 배포

○ 변환된 영상을 신청자에게 제공 및 관리

- 신청 사업자 별로 콘텐츠 영상을 FTP(라디오) 및 외장하드(TV) 등의 제공 방식을 병행하여 배포하고 전달 방법(매뉴얼) 안내

※ 신청자에게 영상을 방송 송출 전 최소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배포

- 국내 방송사의 송출 제한 조치(Block)를 반영하여 파일 배포
- 제공 대상자수 : 해외 한국어 방송사업자 22개사

※ 제공 대상자에게 모든 콘텐츠(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콘텐츠 + 공공·공익 프로그램)를 MP4 포맷으로 제공

- 송출 여부 및 편성표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 제출

○ 배포된 영상에 대한 후속조치

- 배포된 영상 재생 및 화질 등의 문제 발생 시 후속조치를 취해 정상적으로 송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 후속조치 미완료 된 파일은 별도 보관 및 관리
- 조치 완료 영상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 제출

○ 방영권 지원 콘텐츠 영상 관리

- 용역기간 동안 해당 콘텐츠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고 업무 외 사용을 금지하며, 용역기간 완료 후 영상은 폐기 처리

○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용역 결과보고서에 해외 한국어방송 방영권 지원 콘텐츠 배포 결과 및 영상 변환·관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 해외 한국어방송사 송출결과(송출일, 편성표 등)를 받아 이를 반영하여 작성

2. 기타 요청 사항

□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조직체계, 운영 방안 및 기술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수행 및 관리, 전달체계 확보를 위해 제안사는 사업책임자 및 세부과제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 주사업자와 공동사업자별 참여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제시

○ 제안사의 참여인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 수준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책임자(PM)는 본 사업의 참여를 원칙으로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 시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수행인력의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발주기관은 수행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함

□ 업무수행 조건

- 제안사는 착수회의 이전에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일정 및 참여인력 등 세부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한 후 제출하여야 함
- 각 과제별로 진행되는 사업화 전략 수립 경과에 대해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중간 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만 보고서 형태, 시기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해당 용역의 품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본 용역에 적합한 관리방안(수행방법론이 있는 경우) 제시
 - 용역의 산출물 품질보증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품질관리 활동계획
 - 진도관리, 변경관리, 위험관리 방안 등

□ 보안조치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외부누출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감수하여야 함

3. 산출물 제출 및 보고사항

□ 산출물의 제출 및 검토·승인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승인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에는 작업(공정) 및 산출물을 기준으로 상세 일정계획 및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고 검토·승인을 받아야 함
- 작성된 산출물은 반드시 정해진 제출시기에 작성·제출하여 발주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정기 및 수시보고

- 사업수행 진척상황 및 주요 이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다음의 보고 유형에 따라 착수보고, 수시보고, 최종보고 등을 수행하여야 함

구분	주요 내용	시기	보고방법
착수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수행계획 보고○ 사업 수행방안 협의	계약 후 10일 이내	보고회 or 서면
중간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대비 실적보고<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대비 일정 변경사항- 추진내용 및 단계별 결과	중간 보고시	보고회 or 서면
최종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결과 보고○ 최종성과물 제출	계약 종료 10일 전	보고회 or 서면
수시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현안 및 의사결정 사항	필요시	보고회 or 서면

※ 내용 및 시기 등은 추후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진도 관리를 위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수시회의 지속 개최

※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사업 동일

4.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모든 제작물(이미지, 사진 등) 등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본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 및 협상 등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 등 관련 규정에 의함

1.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규격 : A4, PDF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발생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안서는 목차와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한다.
- KS, 관련법규, 표준규격 등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시한다.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은 공고문에 명시한 기한 내 완료 하여야 하며, 제출 완료 후 추가 또는 수정, 변경은 할 수 없다.

□ 제안서 목차 및 구성

○ 제안서 표지에 사업관리자(PM) 연락처(전화번호, e-메일 등) 기재

작성 항목	작성 방법
I.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2. 수행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II.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III. 사업수행부문 1. 개요 2. 추진목표 및 전략 3. 주요 사업내용 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5. 결과물 제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제안요청 내용 세부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 제시<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 작성방안 제시○ 사업완료 시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
IV.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5. 기밀보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 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본 사업과 관련한 기밀 및 보안관리 방안 제시
V. 결과 활용성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 수행 결과물의 활용 분야 및 활용성 제고방안 제시
VI. 첨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서 이외의 별지서식 자료 등 <p>*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p>

□ 제안서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 구비 서류

구분	주요 내용
정량 제안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정성 제안서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로 활용
기타서류	※ V. 별지서식 참조

2. 제안서 평가기준

□ 낙찰자 결정방식 : 제안평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종합평가(100%) =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68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선정. 단, 최저 및 최고점 수에 동일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의 평가점수만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함
- 입찰가격평가는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1) 정량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기준(항목설명)	배점
사업일반 (10)	경영상태 (정량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안정성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에 따름 	10
계			10

(2) 정성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기준(항목설명)	배점
사업일반 (20)	사업이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 및 내용 이해도 ◦ 제안요청내용과의 부합성 	10
	관련분야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전문성 및 강점 ◦ 사업 추진 관련 기술·지식 보유 	10
사업수행 (25)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목표 및 전략의 우수성 ◦ 사업수행방법의 효과성 및 타당성 	10
	수행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법의 구체성,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과제 세부 활동 도출 및 사업관리 방안의 타당성 	10
	수행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체계의 적정성 및 인력배분의 적절성 ◦ 참여인력의 전문성 	5
사업관리 (25)	관리방안 및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계획의 적정성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의 적절성 	10
	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물의 구체성 및 우수성 ◦ 산출물의 객관성 확보 방안 및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구체성, 실현 가능성 	10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척관리, 위험관리, 보고체계의 적정성 	5
계			7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해당없는 경우 삭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발표방식 : e발주시스템(온라인평가)
 - 발표시간 : 총25분(발표15분, 질의응답10분)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불참 시 서면평가 실시
- 유의사항
 - 평가를 위한 제안서 발표 관련 일시, 장소, 발표시간은 KCA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마감 후 입찰담당자가 개별 통보함
 -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발표는 불허(제출한 제안서 기준으로 평가)
 - 제안서 발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 자료를 사용할 수 없음

4. 관련 문의

- 사업관련 : 김혜빈(방송미디어본부 방송콘텐츠진흥팀)
061-350-1413 / hbk@kca.kr
- 입찰관련 : 윤동석(안전경영지원단 재무회계팀)
061-350-1348 / yds21@kca.kr

1. 입찰방식 : 자체조달, 제한경쟁입찰
2.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V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별지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별지 제4호]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회사명 :

주소(소재지) :

성명(대표자) :

본인은 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방송콘텐츠 유통 방영권 지원 운영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상호 :

대표자 :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전화번호(대표)	
주소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설립년도		사업분야	
해당분야 종사기간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제출일 기준)

번호	성명	담당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비고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에 대하여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성명			연령	만 세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소속 및 직위				
본 과업에서의 역할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